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직차3 인터넷상 본인확인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주 문

1. 000협회 회장, 0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가 개별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안내할 것,
나. 현재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대상인 외국인에게 본인확인 실패 시 신분증명 서류에 근거한 본인확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
다.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 및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외국인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인에게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향후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검토배경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3. 24. 제5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 결과

가. 본인확인 서비스 제도의 현황

1) 일반현황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방법은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요구하여 확보한 다음, 이러한 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는 미리 입수해 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것이다.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내 온 정보를 대조하여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면 본인확인이 성공적으로 완료, 일치하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신호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게 된다.

이러한 본인확인서비스는 특정 성명을 가진 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용자의 성명이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

는 경우 성명 데이터베이스 내의 어떤 자의 성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성명이나 등록번호가 근거 없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시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 발급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름 확인이 마치 본인확인 혹은 신원확인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

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위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별도의 가입비용 없이 1건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마다 5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나, 업체에 따라 월 기본요금을 두는 등 정액방식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5원의 건당 이용료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듯이 게시판 사용 시에만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회원가입을 통해서만 정보의 공유, 서비스의 이용과 게시물 등재 등, 전반적 웹사이트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이 경우 회원가입의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에 실패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대상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이 불허되므로 이에 따라 게시판 서비스 외 기타 서비스 이용시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2) 본인확인 서비스의 법적 성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함) 제44조의5에 의거 국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리고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나열하고 있어 이에 의거 국내에서는 「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000협회를 비롯하여 신용정보회사인 000주식회사, 000주식회사, 000주식회사 등 총 4개 협회 및 업체에서 실명확인이라는 이름 하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성명을 가진 이용자에게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그 성격상 정부가 직접 수행할 업무임에도 필요한 설비나 인력을 정부가 직접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보호법」에서도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확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그 성격이 대등하거나, 상호 간에 대체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서비스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법 제44조의5 제3항은 정부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는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이 제3자인 사업자에게 위임된 사실과는 상관 없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외국인에 대한 본인확인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일반 현황

국내 4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에 대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는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바, 3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업체는 OOO협회의 중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직권조사 기간 중인 2008. 5. 20., OOO협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인본인확인 대상을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미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이는 입국 시 법무부에 남게 되는 여권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는 출국 시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인확인서비스의 범위는 국내에 체류하는 합법적 외국인과 국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입국하였던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협회와 계약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제공되므로 다른 업체 즉 나머지 3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2)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국내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본인확인서비스 페이지 혹은 회원가입서비스 페이지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명인증 요청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의 대상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웹 페이지 환경 구축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용자 수가 많은 국내의 대규모 포털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 다년간의 민원제기로 대부분 본인확인 시 외국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나 서비스 제공 의지가 없는 웹사이트들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을 가지고 본인확인서비스

를 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혀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웹사이트 정보 접근 및 서비스 이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OOO협회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제 3조 제1호를 보면 “을”(개별 사업자) 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별을 반드시 하도록 “갑”(OOO협회)이 규정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구별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내·외국인 구분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OOO협회는 “일반외국인”과 “실명인증이 가능한 외국인”의 개념이 상이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은 실명인증 절차가 상이하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내·외국인 회원가입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각 인터넷사이트에서 외국인 실명인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외국인 인터넷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OOO주식회사 역시 법무부의 외국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만 외국인본인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바, 접근방식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가 상이하므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가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조회를 해야 한다고 해서 개별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본인확인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기술적인 근거가 없다.

살펴보건대, 복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를 서버가 수행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회대상 정보, 즉 이름과 등록번호를 검색하는데 사용되는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하나로 운영될 수 있다. 이용자가 보내온 정보를 내국인 데이터베이스에 검색 후 일치하는 쌍이 없으면 외국인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검색하게 하거나 처음에는 이름과 등록번호만을 취합하여 1차 질의를 수행하고 오류 회신이 되는 경우에는 국적 필드(field)와 생년월일 필드를 추가로 요구하는 화면을 띄워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2차 질의를 수행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특수한 기술이나 비용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3) 신분증 사본 등에 기초한 본인확인 추가서비스 거부

더욱이 현재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상범위 내의 외국인, 즉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기술적 오류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에 실패하는 경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통한 별도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000주식회사는 외국인등록증 등 별도 증빙서류를 수신하더라도 동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명인증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000협회의 경우 법무부 외국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중개하므로 별도의 실명인증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국인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확인이 실패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증, 경로우대증 등의 신분증을 팩스,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면 해당 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있다.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등록번호 미소지 외국인 배제

국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에 대하여는 여권 등 증빙서류를 통한 확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본인확인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는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가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OOO협회가 국내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으나, 나머지 다른 3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개선의 혜택을 보는 기관은 60여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인확인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개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별도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하나인 OOO(www.OOO.com)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에 단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에 대하여 국적, 거주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이용자 이미지를 스캔한 신분증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본인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OOO 등의 사례를 볼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미부여되는 외국인에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기술적으로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식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5)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메일과 성명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상거래 이용시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국가들은 국내와 같은 본인확인 과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웹(web)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국적이나 체류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도록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사 해외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대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업체인 OOO(www.OOO.com)은 이메일 주소만으로 회원가입을 수행하고 있다.

4. 검토 및 판단

가.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서는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를 포함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전화 이용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이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 대하여 회원가입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인터넷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의 이용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03진차567 결정) 있어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

한 국제협약」 제1조 및 제5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03진차567 결정)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내·외국인 구분이 차별인지의 여부

국내에서 개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시 웹사이트 본인확인 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혹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이름을 요구하는 최초 단계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명인증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인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외국인조차 많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정보 접근 혹은 서비스 이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허용 한다면 개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외국인을 포함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위임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히 인종 혹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이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신분증 사본 등에 기초한 실명정보 추가를 외국인에 한하여 거부하는 것이 차별인지의 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조치로, 국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가 있을 시 본인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대상에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본인확인 조치를 취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OOO협회와 OOO주식회사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법무부 데이터 베이스를 중개만 하고 있어 정보 추가의 필요성이 없고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내국인에게는 추가로 제출서류에 의한 본인확인 추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만을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외국인이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가 신분증 등에 기초한 별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라.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 외국인을 본인확인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인지의 여부

국내 본인확인서비스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는 91일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만이 서비스 제공 대상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기간 중 법무부 및 OOO협회는 입국 시 법무부에 남게 되는 여권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여주는 방식으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는 외국인의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 진일보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본인확인서비스는 현재 OOO협회 외에도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OOO협회 외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에 입국했다가 출국하였거나 입국한 바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혀 국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써 고려된 바 없으므로 아직 일반적인 국내 본인확인서비스 환경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외국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외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고, 더욱이 해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단한 본인확인 단계를 거쳐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적이나 체류지에 따라 본인확인이 불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과 해외거주 외국인 등 일부 외국인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는 전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는 점, 본인확인 조치가 「정보보호법」에 의거 강제되는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라는 점, 법률에 의거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여부는 이용자의 국적 혹은 국내 거주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 본인확인 서비스가 법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식에 국한될 이유가 없다는 점, 현재 본인확인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필수적 단계로 선행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본인확인이 실패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와 서비스 이용이 거부되는 결과를 발생한다는 점 등을 볼 때,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과 해외거주 외국인 등 일부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마.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

「정보보호법」 제44조의5에서도 명시하는 것과 같이 정부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업무의 소관부처라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중 게시판 사용 등에 있어서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야기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확인서비스의 대안으로서 정부 주도로 개발된 I-Pin 역시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어 외국인 사용자의 인증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바 이 또한 외국인 사용자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없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9. 22.

위원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계 법 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를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68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

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